검 하여야 한다.

- (다) 잠수부는 잠구기 공동사용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방지 조치를 위하여 정기 건 강진단(1회/6개월 이상)을 받아야 한다.
- (라) 잠수시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(마) 10미터이상 잠수시 개인피난용구를 지급(시계, 칼, 나침반, 수심측정기) 하여야 한다.
- (바) 잠수용 산소병의 실병과 공병의 구분 조치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.
- (사) 야간 작업시 잠수작업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아) 수중작업 연락체계를 수립(수중전화 등) 하여야 한다.
- (자) 송기량, 작업시간, 휴식시간 및 잠수 안전수칙은 준수하며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.
 - 음주 후 4시간 이내, 식사 후 2시간 이내, 공복 시 금지
- (차) 잠수작업용 보호구 및 비상시 피난을 위한 용구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(3) 마운드 위에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올려 인공섬의 외측 안벽 시공을 위한해상운 반 안전작업 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바지선의 외판, 갑판의 손상, 부식, 균열 유무
- (나) 방현재의 부착 유무
- (다) 적정량 운반 준수 유무
- (라) 운반작업 계획 수립 여부
 - 거리, 해상조건, 바지선 크기, 바지선과 예인선 조합
- (마) 적재, 하역시 작업책임자 지정 여부
- (바) 바지선과 예인선과의 적정거리 준수 및 상호연락방법 여부
- (사)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상태
- (아) 적재물의 넘어짐, 탈락방지조치 유무
- (자) 해상 크레인 작업 안전점검사항
 - 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, 해지장치 여부
 - 지브의 손상, 변형 유무
 - 윈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유무
 - 유자격자 운전 여부
 - 자체검사일지 기록 여부(1회 이상/6월)
 - 신호수 선임 및 신호체계 수립여부
 - 정격하중 준수여부
 - 인양작업구역 및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여부